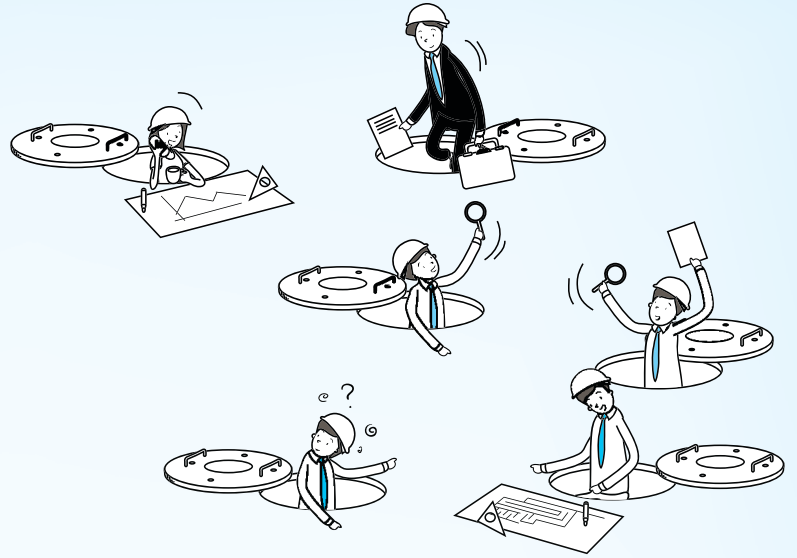


# 해외건설현장 사고 상황 대비 초동조치 매뉴얼

자료제공 :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



## I. 초동조치 매뉴얼

1. CASE 1 : 테러 · 피습으로 인한 사상자 · 피랍 발생
2. CASE 2 : 자연재해 · 사고로 인한 사상자 발생
3. CASE 3 : 전염병으로 인한 사상자 발생

## II. 국토교통부의 향후 안전점검 계획

국토교통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재난안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안전 혁신대책을 마련하고 분야별로 초기대응에 꼭 필요한 내용만 핵심적으로 담은 초동조치 매뉴얼을 발표했다. 이 중 하나로 해외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나 피습, 자연재해, 전염병 등 재난에 대해 해외 건설현장 및 건설사, 해외건설 관련 유관기관 및 정부에서 조치해야 하는 3단계 대처 사항 발표했다. 찾아보기 어려운 백과사전식 구성에서 탈피해, 각 담당자가 본인의 역할을 찾아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, 각 단계별 보고체계와 행정절차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. 해외건설현장이 있는 회원사에게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[편집자주]

## I 초동조치 매뉴얼

### Case 2 자연재해 · 사고로 인한 사상자 발생

#### ① 개요

- 00년 00월 00일 A국 지진으로 우리기업 총 00개 현장 근로자 00명이 사망하고, 00명 부상
- \* 자연재해(지진, 해일 등) 또는 대형사건 · 사고(비행기, 선박, 열차사고 등)

## ② 세부내용

- 일시 : 00. 00. 00(월요일) 15:30
- 위치 : A국 00건설 0000현장 외 다수 현장
- 피해내용
  - 인명피해 : 00명 사망, 00명 부상
  - 차량피해 : 중장비 차량 심각한 파손
  - 시설피해 : 공사시설물 붕괴 및 화재 발생

## ③ 조치사항

- 현지 경찰 및 의료기관에 상황전파 및 시신수습
- 부상자 및 잔여 근로자 안전지역으로 대피(현장 내)
- 현지공관, 외교부, 국정원과 협조체제 구축(관계부처 합동)
- 사상(실종)자 인적사항 확인
- 사태 진전 시 관련 내용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 등

## 1. 주요사항

\* 처리시한은 참고사항이며,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단계별 조치 수행

### (1) (1단계 : 30분 이내) 응급조치 및 발생상황 신속 전파(先조치 後보고)

- 현지 의료기관, 소방서 출동 전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호활동
- 관계기관에 상황을 즉시 전파하고 비상연락망 가동
  - ① 현지 경찰 등, 의료기관 → ② 재외공관, 본사(지사), 발주처
  - ③ 외교부, 국토부(해외건설협회) 순으로 연락

\*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, 해외건설업자는 ‘시공상황, 공사내용 변경 및 해외공사에 따른 각종 사고’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특히 각종 사고의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음

### (2) (2단계 : 1시간 이내) 현장상황 파악 및 잔여 근로자 안전 조치

- 잔여 근로자를 사전에 지정한 대피장소로 즉시 이동

### (3) (3단계 : 3시간 이내, 4단계 : 6시간 이내) 현장상황 재확인 및 철수 여부 결정

- (현장 대기시) 비상 대피장소에서 질서유지, 향후 여진 정보 파악

- (현장 철수시) 대피 인원확인, 이동수단 준비 및 피난처 확보
  - ※ (상황전파 즉시) 국토부 비상대책본부 설치·가동
- 상황 접수 후 장·차관 보고
- 외교부·재외공관, 국정원, 피해업체와 협조체계 구축
  - 잔여근로자 향후 거취여부 결정, 사상자 조치 및 수송수단 확보
- 사상(실종)자 인적사항 파악 및 가족과 접촉 후 상황설명
- 사태 진전 시 관련 내용 브리핑 또는 보도자료 배포

## 2. 초동조치 매뉴얼

구분		임무 및 역할(조치사항) - 1단계 / 30분 이내
해외 건설현장	사전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비상연락체계 구축(현지군경·의료·재외공관)</li> <li>○ 현장 대피 이동경로 설정(현장 밖 대피캠프*, 이동수단, 비상식량 준비, 예상대피경로 검토)</li> <li>* 현장 내 다수의 임시대피소에 우선 집결한 후 비상대피소 → 현장 밖 대피캠프로 이동</li> <li>○ 현장 비상대책반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책임자 설정, 개인별 업무카드 작성·숙지</li> </ul> </li> </ul>
	최초 상황 발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비상대책반 가동, 상황파악 및 보고 지시</li> <li>○ 응급구호활동 지시</li> </ul>
	현장소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비상대책반 가동, 상황파악 및 보고 지시</li> <li>○ 응급구호활동 지시</li> </ul>
	관리팀장 (부책임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①현지경찰/의료기관 → ②재외공관, 본사 → ③외교부, 국토부(해건협) 순으로 연락조치</li> </ul>
	안전팀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경고 사이렌 발송</li> <li>* 사전에 사이렌 유형에 따라 근로자가 사고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훈련 예) 사이렌 1회 테러, 2회 피습, 3회 자연재해 등</li> <li>○ 현장 내 사상자 긴급 구조 및 대피 지시</li> </ul>
건설업체	현지 지사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고체계에 따라 본사 담당자에게 상황전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현지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즉시 신고 및 발주처와 협조체계 구축</li> </ul> </li> <li>○ 현지 공관과 비상연락망 가동</li> </ul>
	본사 담당자	-
유관기관	제외공관	-
	외교부·국정원	-
국토부	(정)건설정책국장 (부)해외건설지원과장	-



구분		임무 및 역할(조치사항) - 4단계 / 6시간 이내
해외 건설현장	현장소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사 진행현황, 피해상황 확인 작업 착수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작업일지 확보, 피해시설 촬영 등 조치</li> </ul> </li> <li>○ 부상자 구호 및 시신 수습(현지 의료기관 협조)</li> </ul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사필수요원을 제외한 인원 이동 준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지 경호업체와 최종 협의 후 이동</li> </ul> </li> </ul>
건설업체	현지 지사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발주처 · 본사에 피해현황 상황보고</li> <li>○ 현장 파건을 통해 실종자 수색 등 지원</li> <li>○ 현장 내 공사필수인력과 연락체계 유지</li> </ul>
	본사 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외교부와 국정원, 국토부(해건협)에 상황전파</li> <li>○ 대피 경로상 안전확보를 위해 현지 정부에 협조 요청</li> <li>○ 현장 내 공사필수인력과 연락체계 유지</li> <li>○ 관리책임자 현지 파견</li> </ul>
유관기관	제외공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추가 사상자 조치를 위한 병원 확보</li> <li>○ 사상자 가족을 위한 숙소 및 차량 등 지원</li> <li>○ 주재국내 사상자 본국 후송 및 행정 절차 조치</li> <li>○ 유관기관과 정부지원 규모 및 방법 논의</li> </ul>
	외교부 · 국정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최중 대피지역 및 재해현장(접근가능시)으로 직원 파견</li> <li>○ 지사, 현장내 공사필수인력과 연락체계 유지</li> <li>○ 잔여 근로자 수송을 위한 대책 협의</li> <li>○ 사상(실종)자 인원 파악 및 향후 대책방안 협의</li> <li>○ 해당지역 여행자 · 체류자 대상 대피 SMS 발송</li> <li>○ 항공사 및 장례업체와 항공기 수송협의 개시</li> </ul>
국토부	(정)건설정책국장 (부)해외건설지원과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(상황개요 파악시, 상황변화시, 종료후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해, 부상자 국내공항 입국시 공항당국과 입국 절차 및 유가족 편의제공 협의</li> </ul> </li> </ul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피경로 확보 필요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대책반 현지 급파</li> <li>○ 해외건설근로자 해당국 입국금지 조치(외교부 협의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당국가내 추가 건설현장 피해사항 파악(업체 협의)</li> </ul> </li> <li>○ 수송항공편에 대한 운항허가, 안전성 검토 및 총괄지휘 해운사(해수부), 인근 군함 · 군용기(국방부) 파견대책 검토</li> </ul>